

창원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571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무성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타임

담당변호사 박희준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6. 23.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5. 26. 선고 2019가소654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706,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3.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105,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부터 2021. 3.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550,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2021. 3.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105,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부터 2022.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550,702원 및 2019. 7. 3.부터 2022.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창원지점 소속

보험모집인이었고, 피고는 아래에서 살피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피고는 2017. 12. 16. 원고를 통하여 매월 277,600원을 납입하는 C의 'D보험'(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7. 12.분부터 2019.

3.분까지 총 16회분의 보험료가 납입되었다.

2) 이 사건 제2 보험계약

원고를 통하여 2018. 3. 26. 피고 명의로 매월 25일마다 2,010,960원을 납입하는 C의 'D보험'(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을 함께 일컬을 때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3.분부터 2019. 4.분까지 총 14회분의 보험료가 납입되었다.

3)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수령

피고는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2019. 7. 2. 해지환급금 10,550,702원을 수령하였다.

다.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고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C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총 10,001,897원을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모집에 관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1) 피고에게 2018. 3. 26.부터 2019. 4. 5.까지 24,344,68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대납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11. 18.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0고정269호).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2023. 1. 12.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같은 법원 2021노3110호), 원고의 상고 역시 2023. 3. 10. 기각되어(대법원 2023도1450호)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 상당액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받아 피고에게 총 24,105,48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여원금의 반환을 구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24,105,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주장하면서도 그 변제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선택한다).

나. 판단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2. 11.경 원고에게 ‘1,000만 원만 융통해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4,105,48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 이율을 특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나)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참조).

다)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은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제대로 납입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원고가 보험모집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이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라)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가 피고 명의를 빌려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 상당액으로 판단된다.

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2 보험계약 체결 즈음 건강검진을 받아 그 건강확인서 및 검진결과표를 C에 제출하기도 한 점을 근거로 ‘피고가 진정한 의사로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보험계약자이므로, 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임의로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2019. 7. 2.

해지환급금 10,550,702원을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돈 상당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상당액 10,550,7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2019. 7. 2. 해지환급금 10,550,702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체결된 계약이므로, 원고가 실질적인 보험계약자로서 보험 해지로 발생한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해지로 피고가 수령한 해지환급금 10,550,70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8. 3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원고는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가 원고 대신 납입한 돈이 일부 있으므로, 그 돈 상당이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역시 이 사건 제2 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것이라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계약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원고 대신 납입하였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은 피고가 원고를 통해 가입한 보험계약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는 2019. 8. 17. C의 직원인 E와 면담하면서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증권번호 F)에 관하여 자동이체 해지 전 보험료까지는 피고 본인이 납입하였다’(을 제9호증 제1쪽)고 밝히고 있다.

(2) 피고는 2018. 12. 24.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납입방법을 변경하고, 2019. 4. 30. 2019. 3.분 보험료를 최종납입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보험료 상당액 277,600원을 지급한 횟수는 2019. 1.분(2019. 1. 25.), 2019. 2.분(2019. 2. 28.), 2019. 3.분(2019. 5. 2.)밖에 없었다.

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1)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관하여 납입된 보험료 총액은 28,237,440원(월 보험료 2,016,960원 × 14회)이다.

(나) 원고는 2018. 1. 11.부터 2019. 5. 2.까지 피고의 계좌 또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보험료 납입을 위한 가상계좌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돈을 이체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원)	비고	기타
1	2018. 1. 11.	334,000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2	2018. 3. 2.	30,000		
3	2018. 3. 5.	210,000		
4	2018. 3. 26.	2,011,000		
5	2018. 5. 21.	2,010,960		
6	2018. 5. 30.	2,010,960	가상계좌로 이체	
7	2018. 7. 4.	2,010,960		
8	2018. 7. 30.	2,010,960	가상계좌로 이체	

9	2018. 9. 28.	2,010,960	가상계좌로 이체	
10	2018. 10. 2.	2,016,960		
11	2018. 10. 29.	2,010,960	가상계좌로 이체	
12	2018. 12. 26.	2,020,000		
13	2019. 1. 25.	277,600		
14	2019. 2. 23.	2,010,960		
15	2019. 2. 28.	277,600		
16	2019. 3. 13.	80,000		
17	2019. 3. 25.	1,000,000		
18	2019. 4. 5.	1,200,000		
19	2019. 5. 2.	277,600		
합 계 액		23,811,480		

(㉔) 피고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2 보험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원)	비고
1	2018. 4. 30.	2,010,960	을 제4, 5호증
2	2018. 6. 18.	2,010,960	
3	2018. 8. 30.	2,010,960	
4	2018. 11. 30.	2,010,960	
5	2019. 1. 30.	2,010,960	
6	2019. 2. 28.	6,032,880	
합 계 액		16,087,680	

(㉕) 피고는 2019. 1. 25.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201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보험료 2,010,960원을 납입하였다.

(㉖) 피고가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은 앞서 본 201만 원을 포함하여 총 383만 원이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중에서 다음 표 기재의 돈은 그 지급시기, 액수 등에 비추어 ①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는 관련 없는 돈이거나, ②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을 위하여 지급한 돈으로 판단된다.

순번	날짜	금액(원)
1	2018. 1. 11.	334,000
2	2018. 3. 2.	30,000
3	2018. 3. 5.	210,000
4	2019. 1. 25.	277,600
5	2019. 2. 28.	277,600
6	2019. 3. 13.	80,000
7	2019. 5. 2.	277,600

원고는 이 돈 이외에도 피고에게 2017. 12. 16. 3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383만 원은 결국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9. 7. 2. 수령한 해지환급금 10,550,702원에서 피고의 대출금이 공제되지 않은 이상, 그 대출금 채무는 결국 피고의 C에 대한 채무로 피고가 변제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달리 그 대출금 채무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국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납입되었고, 피고가 원고 대신 위 보험계약을 위하여 대신 납입한 돈은 5,843,840원으로 판단된다. 피고의 공제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순번	해당월	보험료(원)	지급내역	공제금(원)
1	2018. 3.분	2,010,960	원고가 2018. 3. 26. 2,011,000원 이체	
2	2018. 4.분	2,010,960	피고가 2018. 4. 30. 신용카드로 납입 원고가 2018. 5. 21. 2,010,960원 이체	
3	2018. 5.분	2,010,960	원고가 2018. 5. 30. 가상계좌로 이체	
4	2018. 6.분	2,010,960	피고가 2018. 6. 18. 신용카드로 납입 원고가 2018. 7. 4. 2,010,960원 이체	
5	2018. 7.분	2,010,960	원고가 2018. 7. 30. 가상계좌로 이체	
6	2018. 8.분	2,010,960	피고가 2018. 8. 30. 신용카드로 납입 원고가 2018. 9. 28. 가상계좌로 이체	
7	2018. 9.분	2,010,960	원고가 2018. 10. 2. 2,016,960원 이체	
8	2018. 10.분	2,010,960	원고가 2018. 10. 29. 가상계좌로 이체	
9	2018. 11.분	2,010,960	피고가 2018. 11. 30. 신용카드 납입 원고가 2018. 12. 26. 202만 원 이체	
10	2018. 12.분	2,010,960	피고가 2019. 1. 25. 보험금 대출받아 납입	2,010,960
11	2019. 1.분	2,010,960	피고가 2019. 1. 30. 신용카드로 납입 원고가 2019. 2. 23. 2,010,960원 이체	
12	2019. 2.분	2,010,960	피고가 2019. 2. 28. 6,032,880원 납입 원고가 2019. 3. 25. 및 2019. 4. 5. 합계 220만 원 지급	3,832,880
13	2019. 3.분	2,010,960		
14	2019. 4.분	2,010,960		
합계액				5,843,840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06,862원(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10,550,702원 -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고 인정되는 돈 5,843,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9. 8.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대납한 보험료는 원고가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를 위반하여 C을 기망하고 보험모집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지급한 돈이다. 따라서 불법의 원인으로 제공된 보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른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746조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참조).

2) 보험업법 제98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는 보험료의 대납을 금지하고 있고, 보험업법 제202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보험계약자의 비자발적 가입,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고객 간의 형평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험모집인인 원고가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하고 체결한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나 그 해지환급금의 지급청구가 그 자체로서 반윤리적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김구년, 판사 정수미, 판사 강 웅

1)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수수)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